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안내문

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임대사업자) 간 "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"을 체결하여 공급되며,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흔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.

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 관리 하며.

'민간임대주택'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임대사업자)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 관리되는 주택입니다.

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, <mark>민간임대 입주(예정)</mark> 자분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차인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확인 필수사항

필수 확인사항	해당 법령 및 근거			
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	[관련 법령, 협약 내용] 사업자(시행사,임대사업자) "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49조"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, 임시사용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,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일(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)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			
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	대항력(점유,전입신고)과 우선변제권(확정일자)를 갖춰야, <mark>임차인 보호(선순위자)가 될 수 있습니다.</mark> * 보중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, 보중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			
<mark>최우선변제권</mark> 해당여부	[관련 법령] "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제8조"에 따라 소액임차인(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)은 <mark>최우선변제권(대항력</mark>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)을 가짐 *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('서울시): 196,500만원 이하(23.02.21~), 195,000만원 이하(21.05.11.~23.02.21.) 최우선변제 금액('서울시): 5,500만원 이하(25년 기준). 따라서 5,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전액 환수 가능 * 대항력 요건: 전임신고("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)			
<mark>권리관계</mark> 등 상황 (*계약일,진금일)	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<mark>잔금일 익일까지</mark>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<mark>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</mark> 이 없어야 하며, <mark>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</mark> 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을 열람하여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*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문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: 임대차제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			
<mark>원상복구</mark> 계약 전	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<mark>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.</mark>			

●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임차인 입주 중 확인 필수사항

필수 확인사항	해당 법령 및 근거
임대차계약 진행 시 누락사항 유무 확인	거주 중이더라도 위 '계약 진행 시 필수 확인사항' 재점검 해보기
★보증보험 미갱신 확인★	거주 중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, 보증회사에서 통보하는 우편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)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(SGI) 임차인이 즉시 가입

**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, 계약(갱신),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<u>원스톱</u>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<u>연계를 통한 법률지원</u>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(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: 02-763-0765~0768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: 02-2133-1200)

노량진역 청년안심주택 더클래식 동작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

(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7-1)

공공지원 민간임대

2025. 11. 06.

THE CLASSIC 동작

[주택개요]

- 주택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7-1 (1.9호선 노량진역 6번 출구)

- 공급호수 : 총 272세대 중 금회 추가모집 공공지원민간임대 2세대(일반공급 2세대)

- 단 지 명 : 더클래식 동작

- 시 행 사(임대사업자) : 더클래식 동작

- 시 공 사 : 강남건영(주)

※ 기존 계약자 선정되었던 분들은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 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.11.06.(목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
■ 당 단지는 사용승인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.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 보험은 이행되지 않으며, 등기사항전무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 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 (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로 인한 입주예 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(100만 원)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.)

※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,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, <u>입주 예정께서는 계약전 반드시 대출 실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. (입주예정자께서는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</u> *확인 방법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

■ 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로 일반(개인)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개인사유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100만원을 부담하셔야합니다.)

■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간 : 2024.04.08. ~ 2026.04.07. (*종료일 : 2026.04.07.)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이며, 보증보험 미갱신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.

■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수 있습니다.

■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
■ 본 추가공고와 최초공고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공고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본 추가공고에 명 기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고를 따릅니다.

■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노량진역 청년안심주택 더클래식 동작 입주지원센터(02-823-3300)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[공급일정 및 청약]

입주자 모집공고 2025. 11.06.(목) 청약신청 ▷ 서류심사 대狀자발표 2025.11.11.(월) 10:00~20:00 ▷ 2025.11.11.(화) 14:00

당첨자 서류 원본제출 및 계약체결 2025.11.12.(수)~2025.11.14.(금) 10:00~18:00

■ 입주지정기간

15층 - 2026.01.07. (수)

18층 - 2026.01.12. (월)

■ 청약 문의

- 대표번호 : 02-823-3300, 월요일~금요일 10:00~18:00 (점심시간: 12:00~13:00)

- 홈페이지: https://theclassic2030.co.kr/

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(02-823-3300)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\triangleright

■ 청약 신청 : 단지 홈페이지

-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1000%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예비 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, 계약 후 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

※ 예비자 소진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탈락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. 해당의 경우에도 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되며,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

■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
■ 입주자 사전점검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.

■ 유의사항 :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

[공급현황]

(단위 : 원)

					(=11 · =)
공급 유형	주거 전용 (타입)	공급 호수	층수	보증금	임대료
일반 (청년,신혼부부)	37.91	1	15	50,000,000	780,000
	37.91	1	18	50,000,000	780,000
소 계		2			
합 계		2			
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되며,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,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
- ※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

[신청자격 및 제출서류]

-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.11.06.(목) 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,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 (본인 인증 필수)
- ※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-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및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 *신혼부부형의 경우, 청약자(당첨자) 명의로 계약 체결(공동명의 계약 불가)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)
- 자동차가액 기준 : "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" 준용
- 그 외 신청자격: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(단, 소득 및 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)
- 2025년 자동차 가액기준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, 아래 가액보다 적은 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만 청약가능

자동차가액
4,563만원

-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: 별도안내
- ※ "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"과 "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"의 차이
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)

[당첨자발표]

- 단지 홈페이지 2025.11.11.(화) 14:00
- 예비당첨자 :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순차 진행됩니다.
- ※ 2회이상 연락 불가 또는 계약체결일에 미 계약시 자동 당첨 취소되며, 예비 당첨자에게 순번대로 개별통보

[별첨]

-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(최신(25년))
- 일반공급 제출서류

제출서류	발급처	유의사항
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 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 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"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" 추가 3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4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	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, 정부24(인터넷)	
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"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" 추가 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 5. 공급신청서 6. 서약서 7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	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	
8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*전전년도~해당년도 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 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 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확인 - 청년: 본인만 출력 제출 - 신혼부부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- 예비신혼부부: 예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※ "과세내역 없음" 인 경우도 발급	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	- 직접 방문하여 발급 기준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
9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 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	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, 정부24(인터넷)	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
10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		
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		★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(입주 후 7일 이내 제출)